

선	기관의 장
람	

시보

제47호 2022. 12. 7.(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2-374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2-383호	광양 상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3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2-2324호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광양시 공고 제2022-2328호	도로지정공고	46
광양시 공고 제2022-233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48
광양시 공고 제2022-2350호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9
광양시 공고 제2022-2351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8
광양시 공고 제2022-2355호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65
광양시 공고 제2022-2356호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3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 271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7.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양산길 90 외 7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 237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2.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8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072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양산길 90	20221207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4-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8	20221207	20081001	대림과 오성마을의 왕래하는 길에서 명명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산149-2, 산21-1, 산21-2, 957	전라남도 광양시 사동로 149 (마동)	20221207	20081001	옛 지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543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1930	20221207	20090703	섬진강 변과 매화 재배 지에서 명명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84-4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72	20221207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112-4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이천길 93	20221207	20210811	행정리명에서 인용
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846-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등1길 77	20221207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8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762-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2공단2길 71	20221207	20130415	광양초남제2공단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486호(2022. 11. 3.)와 관련, 광양시 성황동 일원의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7.

광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54,753	증) 7.3	654,760.3	100.0	
주거 지역	소 계	457,268	증) 37.6	457,305.6	69.8	
	제1종일반주거지역	178,408	감) 149.3	178,258.7	27.2	
	제2종일반주거지역	46,275	증) 334.1	46,609.1	7.1	
	제3종일반주거지역	190,727	증) 194.7	190,921.7	29.2	
	준주거지역	41,858	감) 341.9	41,516.1	6.3	
상업 지역	소 계	85,823	감) 4.3	85,818.7	13.1	
	일반상업지역	85,823	감) 4.3	85,818.7	13.1	
녹지 지역	소 계	111,662	감) 26.0	111,636.0	17.1	
	자연녹지지역	111,662	감) 26.0	111,636.0	17.1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양시 성황동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78,258.7	200이하	확정측량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축소
-	광양시 성황동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6,609.1	250이하	확정측량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증가
-	광양시 성황동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90,921.7	300이하	확정측량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증가
-	광양시 성황동 일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1,516.1	500이하	확정측량에 따른 준주거지역 면적 축소
-	광양시 성황동 일원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85,818.7	1,300이하	확정측량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면적 축소
-	광양시 성황동 일원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111,636.0	100이하	확정측량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면적 축소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	성황·도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황동 일원	654,753	증) 7.3	654,760.3	전라남도고시 제2017-35호 (2017.2.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변경	14	성황동 일원	654,760.3	확정측량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다.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성황동 일원	654,753	증) 7.3	654,760.3	전라남도고시 제2017-35호 (2017.2.2.)

라.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변경	-	성황동 일원	654,760.3	확정측량으로 인한 도시개발구역 변경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 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74	11,415	183,193	5	991	19,417	33	6,006	92,923	36	4,418	70,853
	변경	74	11,400	183,449.2	5	981	19,287.1	33	6,004	93,153.8	36	4,415	71,008.3
광로	기정	1	751	34,216	-	-	-	-	-	-	1	751	34,216
	변경	1	752	34,347.1	-	-	-	-	-	-	1	752	34,347.1
대로	기정	4	1,625	46,882	-	-	-	4	1,625	46,882	-	-	-
	변경	4	1,625	47,027.0	-	-	-	4	1,625	47,027.0	-	-	-
중로	기정	20	4,420	68,401	3	733	16,557	7	1,211	20,152	10	2,476	31,692
	변경	20	4,407	68,293.9	3	723	16,425.9	7	1,211	20,167.8	10	2,473	31,700.2
소로	기정	49	4,619	33,694	2	258	2,860	22	3,170	25,889	25	1,191	4,945
	변경	49	4,616	33,781.2	2	258	2,861.2	22	3,168	25,959.0	25	1,190	4,961.0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3	40	1,020 (751)	광로2-5호	광로3-1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중복결정 (13m, 533㎡)
변경	광로	3	3	40	1,020 (752)	광로2-5호	광로3-1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중복결정 (13m, 534.2㎡)
기정	대로	2	7	30~ 37	513	광로3-3호	대로2-2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중복결정 (34m, 1,039㎡)
변경	대로	2	7	30~ 37	512	광로3-3호	대로2-2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중복결정 (34m, 1,038.7㎡)
기정	대로	2	27	30	581 (36)	대로-7호	광로2-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대로	2	27	30	581 (37)	대로-3호	광로-8-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1	118	20~ 23.5	1,116 (232)	광로3-3호	대로2-12호	일반도로	전남 2011-194호 (11.7.5)	중복결정 (179m, 3,574㎡)
변경	중로	1	118	20~ 23.5	1,116 (229)	광로3-3호	대로2-12호	일반도로	전남 2011-194호 (11.7.5)	중복결정 (179m, 3,573.1㎡)
기정	중로	1	121	20	519 (24)	광로3-1호	대로2-2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중복결정 (24m, 457㎡)
변경	중로	1	121	20	519 (23)	광로3-1호	대로2-2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중복결정 (23m, 453.8㎡)
기정	중로	1	성황1	20~ 27	477	광로3-1호	대로2-1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중복결정 (30m, 600㎡)
변경	중로	1	147	20~ 27	471	광로3-1호	대로2-1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중복결정 (30m, 600.1㎡)
기정	중로	2	성황1	17.5	251	대로2-29호	중로 3-성황1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2	182	17.5	251	대로2-29호	중로 3-17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2	성황2	17.5	369	대로2-7호	중로 1-성황1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2	183	17.5	369	대로2-7호	중로 1-14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2	성황3	15	41	중로 2-성황1호	중로 3-성황1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2	184	15	41	중로 2-182호	중로 3-17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구분	구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성황4	15	83	광로3-3호	중로 2-성황1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2	185	15	83	광로3-3호	중로 2-18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2	성황5	15	82	광로3-3호	중로 2-성황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2	186	15	82	광로3-3호	중로 2-183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2	성황6	15	41	중로 2-성황2호	중로 3-성황5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2	187	15	41	중로 2-183호	중로 3-183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3	126	13	186	중로 2-성황4호	중로 1-118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3	126	13	184	중로 2-185호	중로 1-118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3	성황1	13	365	중로 2-성황1호	중로 3-126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3	179	13	365	중로 2-182호	중로 3-126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3	성황2	13	200	중로 2-성황1호	중로 2-성황1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3	180	13	200	중로 2-182호	중로 2-18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3	성황3	13	212	중로 2-성황2호	중로 2-성황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3	181	13	212	중로 2-183호	중로 2-183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3	성황4	13	198	중로 2-성황2호	중로 2-성황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3	182	13	198	중로 2-183호	중로 2-183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3	성황5	13	401	중로 2-성황2호	중로 2-성황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3	183	13	401	중로 2-183호	중로 2-183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3	성황6	12	117	대로2-7호	소로 1-성황1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3	184	12	117	대로2-7호	소로 1-251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구분	구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성황7	12	212	중로 2-125호	소로 2-성황8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3	185	12	212	중로 2-125호	소로 2-66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3	성황8	12	235	대로2-7호	중로3-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3	186	12	234	대로2-7호	중로3-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중로	3	성황9	12	350	중로 3-성황8호	대로2-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중로	3	187	12	350	중로 3-186호	대로2-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1	성황1	11	147	중로 3-성황5호	중로 3-성황6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1	251	11	147	중로 3-183호	중로 3-184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1	성황2	11	111	중로 3-성황6호	중로 2-성황4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1	252	11	111	중로 3-184호	중로 2-185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2	8	147	중로 3-성황5호	중로 3-성황6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56	8	147	중로 3-183호	중로 3-184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3	8	147	중로 3-성황5호	중로 3-성황6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57	8	147	중로 3-183호	중로 3-184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5	8	78	중로 3-성황6호	소로 2-성황6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59	8	78	중로 3-184호	소로 2-660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6	8	148	중로 3-성황6호	소로 1-성황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60	8	147	중로 3-184호	소로 1-25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7	8	131	중로 2-125호	중로 2-125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61	8	131	중로 2-125호	중로 2-125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구분	구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성황8	8	599	중로 2-125호	중로 2-125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62	8	599	중로 2-125호	중로 2-125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9	8	228	중로 2-125호	소로 2-성황8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63	8	228	중로 2-125호	소로 2-66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10	8	198	중로 2-125호	소로 2-성황8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64	8	198	중로 2-125호	소로 2-66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11	8	39	148호 근린공원	소로 2-성황8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65	8	39	148호 근린공원	소로 2-66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12	8	39	소로 2-성황8호	148호 근린공원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66	8	39	소로 2-662호	148호 근린공원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13	8	326	중로 3-성황8호	중로 3-성황8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67	8	326	중로 3-186호	중로 3-186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14	8	57	중로 3-성황8호	소로 2-성황13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68	8	57	중로 3-186호	소로 2-66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15	8	57	중로 3-성황8호	소로 2-성황13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69	8	57	중로 3-186호	소로 2-66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16	8	57	중로 3-성황8호	소로 2-성황13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70	8	57	중로 3-186호	소로 2-66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17	8	57	중로 3-성황8호	소로 2-성황13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71	8	57	중로 3-186호	소로 2-66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구분	구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성황18	8	204	중로 3-성황8호	중로 3-성황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72	8	204	중로 3-186호	중로 3-18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19	8	193	중로 3-성황8호	중로 3-성황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73	8	193	중로 3-186호	중로 3-18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20	8	168	중로 3-성황8호	중로 3-성황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74	8	168	중로 3-186호	중로 3-18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21	8	145	중로 3-성황8호	중로 3-성황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75	8	145	중로 3-186호	중로 3-18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22	8	109	중로 3-성황8호	중로 3-성황9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76	8	108	중로 3-186호	중로 3-187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1	6	83	소로 2-성황11호	소로 2-성황12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73	6	83	소로 2-665호	소로 2-666호	일반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1	8	16	소로 3-성황2호	중로 3-성황1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55	8	16	소로 3-674호	중로 3-17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2	성황4	8	27	중로 1-성황1호	중로 3-성황5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2	658	8	27	중로 1-147호	중로 3-18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2	4	181	4호 소공원	대로 2-2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74	4	181	4호 소공원	대로 2-2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3	4	41	광로3-3호	중로 3-126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75	4	41	광로3-3호	중로 3-126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구분	구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성황4	4	41	중로 2-성황1호	중로 3-성황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76	4	41	중로 2-182호	중로 3-180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5	4	29	광로3-3호	중로 3-성황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77	4	29	광로3-3호	중로 3-180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6	4	29	광로3-3호	중로 3-성황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78	4	29	광로3-3호	중로 3-181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7	4	41	중로 2-성황2호	중로 3-성황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79	4	41	중로 2-183호	중로 3-181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8	4	28	광로3-3호	중로 3-성황4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80	4	28	광로3-3호	중로 3-18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9	4	41	중로 2-성황2호	중로 3-성황4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81	4	41	중로 2-183호	중로 3-18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10	4	24	대로2-7호	소로 2-성황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82	4	25	대로2-7호	소로 2-657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11	4	23	대로2-29호	소로 2-성황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83	4	22	대로2-29호	소로 2-66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12	4	31	소로 2-성황8호	소로 2-성황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84	4	31	소로 2-662호	소로 2-66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13	4	85	중로 2-125호	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85	4	85	중로 2-125호	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구분	구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성황14	4	93	소로 3-성황17호	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86	4	93	소로 3-689호	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15	4	31	중로 3-성황7호	소로 2-성황10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87	4	31	중로 3-679호	소로 2-664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16	4	31	소로 2-성황10호	소로 2-성황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88	4	31	소로 2-664호	소로 2-66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17	4	21	광로3-3호	소로 2-성황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89	4	21	광로3-3호	소로 2-66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18	4	23	광로3-3호	소로 2-성황1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90	4	23	광로3-3호	소로 2-667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19	4	57	중로 3-성황8호	소로 2-성황1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91	4	57	중로 3-186호	소로 2-667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20	4	60	중로 3-성황8호	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92	4	60	중로 3-186호	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21	4	23	대로2-7호	소로 2-성황1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93	4	22	대로2-7호	소로 2-67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22	4	32	소로 2-성황18호	소로 2-성황1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94	4	32	소로 2-672호	소로 2-67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23	4	32	소로 2-성황20호	소로 2-성황21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95	4	32	소로 2-674호	소로 2-675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구분	구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성황24	4	32	소로 2-성황21호	소로 2-성황2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96	4	32	소로 2-675호	소로 2-676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기정	소로	3	성황25	4	79	중로 3-성황9호	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소로	3	697	4	79	중로 3-187호	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2017-35호 (17.2.2)	

※ 금회 변경된 결정조서 외에 결정조서는 변경없음

※ 대로2-29호선 중복결정 면적 725.2㎡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3-3	광로 3-3	·변경 - 폭원 : 40m(변경없음) - 연장 : 751m→752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대로 2-7	대로 2-7	·변경 -폭원 : 30~37m(변경없음) -연장 : 513m→512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대로 2-27	대로 2-27	·변경 -폭원 : 30m(변경없음) -연장 : 36m→37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중로 1-118	중로 1-118	·변경 -폭원 : 20~23.5m(변경없음) -연장 : 232m→229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중로 1-121	중로 1-121	·변경 -폭원 : 20m(변경없음) -연장 : 24m→23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중로 1-147	중로 1-147	·변경 -폭원 : 20~27m(변경없음) -연장 : 477m→471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및 도로명 확정 (중로1-성황1 → 중로1-147)
중로 2-182	중로 2-182	-	·도로명 확정 (중로2-성황1 → 중로2-182)
중로 2-183	중로 2-183	-	·도로명 확정 (중로2-성황2 → 중로2-183)
중로 2-184	중로 2-184	-	·도로명 확정 (중로2-성황3 → 중로2-184)
중로 2-185	중로 2-185	-	·도로명 확정 (중로2-성황4 → 중로2-185)
중로 2-186	중로 2-186	-	·도로명 확정 (중로2-성황5 → 중로2-186)
중로 2-187	중로 2-187	-	·도로명 확정 (중로2-성황6 → 중로2-187)
중로 3-126	중로 3-126	·변경 -폭원 : 13m(변경없음) -연장 : 186m→184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도면표시 번호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179	중로 3-179	-	·도로명 확정 (중로3-성황1 → 중로3-179)
중로 3-180	중로 3-180	-	·도로명 확정 (중로3-성황2 → 중로3-180)
중로 3-181	중로 3-181	-	·도로명 확정 (중로3-성황3 → 중로3-181)
중로 3-182	중로 3-182	-	·도로명 확정 (중로3-성황4 → 중로3-182)
중로 3-183	중로 3-183	-	·도로명 확정 (중로3-성황5 → 중로3-183)
중로 3-184	중로 3-184	-	·도로명 확정 (중로3-성황6 → 중로3-184)
중로 3-185	중로 3-185	-	·도로명 확정 (중로3-성황7 → 중로3-185)
중로 3-186	중로 3-186	·변경 -폭원 : 12m(변경없음) -연장 : 235m→234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및 도로명 확정 (중로3-성황8 → 중로3-186)
중로 3-187	중로 3-187	-	·도로명 확정 (중로3-성황9 → 중로3-187)
소로 1-251	소로 1-251	-	·도로명 확정 (소로1-성황1 → 소로1-251)
소로 1-252	소로 1-252	-	·도로명 확정 (소로1-성황2 → 소로1-252)
소로 2-655	소로 2-655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 → 소로2-655)
소로 2-656	소로 2-656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2 → 소로2-656)
소로 2-657	소로 2-657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3 → 소로2-657)
소로 2-658	소로 2-658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4 → 소로2-658)
소로 2-659	소로 2-659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5 → 소로2-659)
소로 2-660	소로 2-660	·변경 -폭원 : 8m(변경없음) -연장 : 148m→147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및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6 → 소로2-660)
소로 2-661	소로 2-661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7 → 소로2-661)
소로 2-662	소로 2-662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8 → 소로2-662)
소로 2-663	소로 2-663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9 → 소로2-663)

도면표시 번호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664	소로 2-664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0 → 소로2-664)
소로 2-665	소로 2-665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1 → 소로2-665)
소로 2-666	소로 2-666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2 → 소로2-666)
소로 2-667	소로 2-667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3 → 소로2-667)
소로 2-668	소로 2-668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4 → 소로2-668)
소로 2-669	소로 2-669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5 → 소로2-669)
소로 2-670	소로 2-670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6 → 소로2-670)
소로 2-671	소로 2-671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7 → 소로2-671)
소로 2-672	소로 2-672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8 → 소로2-672)
소로 2-673	소로 2-673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19 → 소로2-673)
소로 2-674	소로 2-674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20 → 소로2-674)
소로 2-675	소로 2-675	-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21 → 소로2-675)
소로 2-676	소로 2-676	·변경 -폭원 : 8m(변경없음) -연장 : 109m→108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및 도로명 확정 (소로2-성황22 → 소로2-676)
소로 3-673	소로 3-673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 → 소로3-673)
소로 3-674	소로 3-674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2 → 소로3-674)
소로 3-675	소로 3-675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3 → 소로3-675)
소로 3-676	소로 3-676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4 → 소로3-676)
소로 3-677	소로 3-677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5 → 소로3-677)
소로 3-678	소로 3-678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6 → 소로3-678)
소로 3-679	소로 3-679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7 → 소로3-679)

도면표시 번호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680	소로 3-680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8 → 소로3-680)
소로 3-681	소로 3-681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9 → 소로3-681)
소로 3-682	소로 3-682	·변경 -폭원 : 4m(변경없음) -연장 : 24m→25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및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0 → 소로2-682)
소로 3-683	소로 3-683	·변경 -폭원 : 4m(변경없음) -연장 : 23m→22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및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1 → 소로2-683)
소로 3-684	소로 3-684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2 → 소로3-684)
소로 3-685	소로 3-685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3 → 소로3-685)
소로 3-686	소로 3-686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4 → 소로3-686)
소로 3-687	소로 3-687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5 → 소로3-687)
소로 3-688	소로 3-688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6 → 소로3-688)
소로 3-689	소로 3-689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7 → 소로3-689)
소로 3-690	소로 3-690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8 → 소로3-690)
소로 3-691	소로 3-691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19 → 소로3-691)
소로 3-692	소로 3-692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20 → 소로3-692)
소로 3-693	소로 3-693	·변경 -폭원 : 4m(변경없음) -연장 : 23m→22m(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연장 변경 및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21 → 소로3-693)
소로 3-694	소로 3-694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22 → 소로3-694)
소로 3-695	소로 3-695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23 → 소로3-695)
소로 3-696	소로 3-696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24 → 소로3-696)
소로 3-697	소로 3-697	-	·도로명 확정 (소로3-성황25 → 소로3-697)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6	주차장	성황동 산323-101일원 (3종일반주거)	1,135	증) 11.8	1,146.8	전남 2017-35호 (17.2.2)	노외 주차장
변경	217	주차장	성황동 산323-45일원 (준주거)	1,155	감) 2.3	1,152.7	전남 2017-35호 (17.2.2)	노외 주차장
변경	218	주차장	성황동 456-2일원 (준주거)	1,160	감) 0.3	1,159.7	전남 2017-35호 (17.2.2)	노외 주차장
변경	219	주차장	성황동 416-1일원 (준주거)	1,160	-	1,160.0	전남 2017-35호 (17.2.2)	노외 주차장
변경	220	주차장	성황동 403-2일원 (주거)	820	감) 0.8	819.2	전남 2017-35호 (17.2.2)	노외 주차장
변경	221	주차장	성황동 1853-245일원 (주거)	802	감) 1.7	800.3	전남 2017-35호 (17.2.2)	노외 주차장
변경	222	주차장	성황동 1853-89일원 (주거)	810	감) 0.8	809.2	전남 2017-35호 (17.2.2)	노외 주차장
변경	223	주차장	성황동 1853-156일원 (주거)	820	감) 1.2	818.8	전남 2017-35호 (17.2.2)	노외 주차장
변경	224	주차장	성황동 1853-190일원 (주거)	621	감) 10.5	610.5	전남 2017-35호 (17.2.2)	노외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6	주차장	·변경 - 위치 : 성황동 산323-101일원 - 면적 : 1,135m ² → 1,146.8m ²	·확정측량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번호 확정(성황1→216)
217	주차장	·변경 - 위치 : 성황동 산323-45일원 - 면적 : 1,155m ² → 1,152.7m ²	·확정측량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번호 확정(성황2→217)
218	주차장	·변경 - 위치 : 성황동 456-2일원 - 면적 : 1,160m ² → 1,159.7m ²	·확정측량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번호 확정(성황3→218)
219	주차장	-	·도면 표시번호 확정(성황4→219)
220	주차장	·변경 - 위치 : 성황동 403-2일원 - 면적 : 820m ² → 819.2m ²	·확정측량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번호 확정(성황5→220)
221	주차장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245일원 - 면적 : 802m ² → 800.3m ²	·확정측량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번호 확정(성황6→221)
222	주차장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89일원 - 면적 : 810m ² → 809.2m ²	·확정측량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번호 확정(성황7→222)
223	주차장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156일원 - 면적 : 820m ² → 818.8m ²	·확정측량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번호 확정(성황8→223)
224	주차장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190일원 - 면적 : 621m ² → 610.5m ²	·확정측량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번호 확정(성황9→224)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녹지	완충녹지	광로2-5호선변	94,096 (1,656)	- (감) 2.4)	94,096 (1,653.6)	94.12.20	00.5.8 동광양
변경	28	녹지	완충녹지	광로2-7호선변	23,160 (1,406)	- (감) 0.9)	23,160 (1,405.1)	91.10.12	99.12.4 동광양
변경	150	녹지	완충녹지	광로3-3호선변	3,455	감) 13.9	3,441.1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151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	3,063	감) 9.4	3,053.6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152	녹지	완충녹지	대로2-29호선변	1,370	감) 4.7	1,365.3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36	녹지	경관녹지	성황동성황천변	18,437	증) 56.6	18,493.6	94.12.20	96.10.29 동광양
변경	153	녹지	경관녹지	중로1-성황1호선변, 소로3-성황2호선변, 대로2-29호선변	53,533	증) 0.6	53,533.6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154	녹지	경관녹지	소로2-성황7호선변	2,701	감) 25.6	2,675.4	전남 2017-35호 (17.2.2)	

※ 금회 변경된 결정조서 외에 결정조서는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4	녹지	·변경 - 위치 : 광로2-5호선변 - 면적 : 1,656m ² → 1,653.6m ²	·확정측량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28	녹지	·변경 - 위치 : 광로2-7호선변 - 면적 : 1,406m ² → 1,405.1m ²	·확정측량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150	녹지	·변경 - 위치 : 광로3-3호선변 - 면적 : 3,455m ² → 3,441.1m ²	·확정측량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1→150)
151	녹지	·변경 - 위치 : 대로2-7호선변 - 면적 : 3,063m ² → 3,053.6m ²	·확정측량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2→151)
152	녹지	·변경 - 위치 : 대로2-29호선변 - 면적 : 1,370m ² → 1,365.3m ²	·확정측량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3→152)
36	녹지	·변경 - 위치 : 성황동 성황천변 - 면적 : 18,437m ² → 18,493.6m ²	·확정측량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153	녹지	·변경 - 위치 : 중로1-성황1호선변, 소로3-성황2호선변, 대로2-29호선변 - 면적 : 53,533m ² → 53,533.6m ²	·확정측량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4→153)
154	녹지	·변경 - 위치 : 소로2-성황7호선변 - 면적 : 2,701m ² → 2,675.4m ²	·확정측량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5→154)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성황공원	근린공원	성황동 일원	42,820 (107)	- (감) 2.0	42,820 (105.0)	91.10.12	
변경	17	도이공원	근린공원	성황동 일원	478,140 (10,958)	- (감) 119.4	478,140 (10,838.6)	11.8.26	
변경	188	도이1공원	근린공원	성황동 1853-101 일원	10,767	증) 8.0	10,775.0	11.8.26	
변경	189	성황1호	근린공원	성황동 1853-334 일원	10,509	감) 62.2	10,446.8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190	성황2호	어린이공원	성황동 1853-54 일원	1,510	감) 2.8	1,507.2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191	성황3호	어린이공원	성황동 1853-174 일원	1,512	증) 2.2	1,514.2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192	성황6호	어린이공원	성황동 412-2 일원	1,524	감) 1.2	1,522.8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193	성황4호	소공원	성황동 산323-69 일원	800	감) 0.7	799.3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194	성황5호	소공원	성황동 산323-3 일원	5,112	감) 5.1	5,106.9	전남 2017-35호 (17.2.2)	

※ 금회 변경된 결정조서 외에 결정조서는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	성황공원	·변경 - 위치 : 성황동 일원 - 면적 : 107㎡ → 105.0㎡	·확정측량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변경
17	도이공원	·변경 - 위치 : 성황동 일원 - 면적 : 10,958㎡ → 10,838.6㎡	·확정측량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변경
188	도이1공원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101 일원 - 면적 : 10,767㎡ → 10,775.0㎡	·확정측량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 번호 확정(148→188)
189	성황1호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304 일원 - 면적 : 10,509㎡ → 10,446.8㎡	·확정측량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 번호 확정(성황1→189)
190	성황2호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54 일원 - 면적 : 1,510㎡ → 1,507.2㎡	·확정측량에 따른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2→190)
191	성황3호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174 일원 - 면적 : 1,512㎡ → 1,514.2㎡	·확정측량에 따른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3→191)
192	성황6호	·변경 - 위치 : 성황동 412-2 일원 - 면적 : 1,524㎡ → 1,522.8㎡	·확정측량에 따른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4→192)
193	성황4호	·변경 - 위치 : 성황동 산323-69 일원 - 면적 : 800㎡ → 799.3㎡	·확정측량에 따른 소공원 면적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5→193)
194	성황5호	·변경 - 위치 : 성황동 산323-3 일원 - 면적 : 5,112㎡ → 5,106.9㎡	·확정측량에 따른 소공원 면적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6→194)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7	학교	중학교	성황동 1853-274 일원	17,595	-	17,595.0	전남 2017-35호 (17.2.2)	도면 번호 변경

※ 금회 변경된 결정조서 외에 결정조서는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7	학교	-	·도면표시 번호 확정(성황1→37)

(2)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공공청사	공공청사	성황동 419 일원	6,612	증) 0.2	6,612.2	전남 2017-35호 (17.2.2)	
변경	17	공공청사	공공청사	성황동 1853-300 일원	1,251	증) 0.3	1,251.3	전남 2017-35호 (17.2.2)	

※ 금회 변경된 결정조서 외에 결정조서는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	공공청사	·변경 - 위치 : 성황동 419 일원 - 면적 : 6,612m ² → 6,612.2m ²	·확정측량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 번호 확정(성황1→16)
17	공공청사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300 일원 - 면적 : 1,251m ² → 1,251.3m ²	·확정측량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 번호 확정(성황2→17)

라. 방재시설(변경)

(1) 하천(변경)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하1	성황천	하천	성황동 C	성황동 383-4	-	1.5	48,065 (39,108)	- (증) 0.8	48,065 (39,108.8)	94.12.20	중복결정 (도로) 1,638.8m ²

※ 금회 변경된 결정조서 외에 결정조서는 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하1	성황천	·변경 - 위치 : 성황동 383-4 일원 - 면적 : 39,108m ² → 39,108.8m ²	·확정측량에 따른 하천 면적 변경

(2) 유수지(저류시설)(변경)

■ 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유수지	저류 시설	성황동 1853-94 일원	5,308	증) 257.4	5,565.4	전남 2017-35호 (17.2.2)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변경	11	유수지	저류 시설	성황동 1853-207 일원	5,070	증) 221.7	5,291.7	전남 2017-35호 (17.2.2)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금회 변경된 결정조서 외에 결정조서는 변경없음

■ 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유수지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94 일원 - 면적 : 5,308m ² → 5,565.4m ²	·확정측량에 따른 저류시설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 번호 확정(성황1→10)
11	유수지	·변경 - 위치 : 성황동 1853-207 일원 - 면적 : 5,070m ² → 5,291.7m ²	·확정측량에 따른 저류시설 면적 변경 및 도면 표시 번호 확정(성황2→11)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 단독주택용지 획지(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R1	R1	4,680	감) 1.1	4,678.9	-1	256	감) 20.3	235.7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2	261	감) 25.3	235.7	
					-3	261	감) 25.3	235.7	
					-4	261	감) 25.4	235.6	
					-5	262	감) 26.4	235.6	
					-6	261	감) 25.5	235.5	
					-7	261	감) 25.4	235.6	
					-8	261	감) 25.4	235.6	
					-9	256	감) 20.3	235.7	
					-10	255	감) 19.3	235.7	
					-11	261	감) 28.8	232.2	
					-12	261	감) 28.8	232.2	
					-13	261	감) 28.9	232.1	
					-14	262	감) 29.8	232.2	
					-15	261	감) 28.9	232.1	
					-16	261	감) 28.8	232.2	
					-17	261	감) 28.7	232.3	
					-18	257	감) 24.6	232.4	
					-19	-	증) 232.4	232.4	
					-20	-	증) 232.4	232.4	
R2	R2	2,848	감) 4.9	2,843.1	-1	264	감) 64.1	199.9	
					-2	276	감) 96.1	179.9	
					-3	275	감) 95.1	179.9	
					-4	339	감) 159.1	179.9	
					-5	340	감) 160.1	179.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6	264	감) 84.1	179.9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7	276	감) 99.7	176.3	
					-8	275	감) 61.8	213.2	
					-9	275	감) 19.9	255.1	
					-10	264	감) 84.2	179.8	
					-11	-	증) 179.8	179.8	
					-12	-	증) 179.9	179.9	
					-13	-	증) 179.9	179.9	
					-14	-	증) 179.9	179.9	
					-15	-	증) 199.8	199.8	
R3	R3	2,337	-	2,337.0	-1	233	증) 0.6	233.6	
					-2	234	감) 0.4	233.6	
					-3	234	증) 0.2	234.2	
					-4	234	감) 0.4	233.6	
					-5	233	증) 0.8	233.8	
					-6	233	증) 0.8	233.8	
					-7	234	감) 0.4	233.6	
					-8	234	감) 0.4	233.6	
					-9	234	감) 0.4	233.6	
					-10	234	감) 0.4	233.6	
R4	R4	2,120	감) 5.5	2,114.5	-1	278	감) 52.4	225.6	
					-2	282	감) 56.4	225.6	
					-3	282	감) 56.2	225.8	
					-4	287	감) 61.4	225.6	
					-5	250	감) 28.3	221.7	
					-6	248	증) 65.2	313.2	
					-7	248	감) 22.2	225.8	
					-8	245	감) 19.4	225.6	
					-9	-	증) 25.6	225.6	
R5	R5	2,170	증) 3.4	2,173.4	-1	272	증) 94.0	366.0	
					-2	271	증) 83.9	354.9	
					-3	271	감) 28.9	242.1	
					-4	271	감) 28.9	242.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5	271	감) 29.3	241.7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6	271	감) 28.8	242.2	
					-7	271	감) 28.5	242.5	
					-8	272	감) 30.1	241.9	
R6	R6	1,029	-	1,029.0	-1	257	증) 0.3	257.3	
					-2	257	증) 0.3	257.3	
					-3	257	증) 0.2	257.2	
					-4	258	감) 0.8	257.2	
R7	R7	2,153	증) 0.1	2,153.1	-1	280	감) 0.6	279.4	
					-2	280	감) 31.2	248.8	
					-3	280	증) 15.9	295.9	
					-4	280	증) 16.0	296.0	
					-5	257	감) 58.7	198.3	
					-6	258	감) 104.6	153.4	
					-7	258	감) 47.9	210.1	
					-8	260	감) 48.8	211.2	
					-9	-	증) 200.0	260.0	
R8	R8	1,261	감) 0.4	1,260.6	-1	253	증) 0.1	253.1	
					-2	252	증) 1.0	253.0	
					-3	252	증) 1.0	253.0	
					-4	252	증) 1.0	253.0	
					-5	252	감) 3.5	248.5	
R9	R9	1,930	감) 2.5	1,927.5	-1	240	증) 89.3	329.3	
					-2	241	증) 56.5	297.5	
					-3	241	감) 69.7	171.3	
					-4	241	감) 59.4	181.6	
					-5	241	감) 41.7	199.3	
					-6	241	증) 9.3	250.3	
					-7	241	감) 9.1	231.9	
					-8	244	증) 22.3	266.3	
R10	R10	1,802	감) 3.2	1,798.8	-1	225	감) 5.4	219.6	
					-2	225	증) 123.1	348.1	
					-3	225	증) 104.9	329.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4	225	증) 23.1	248.1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5	225	감) 18.6	206.4	
					-6	226	감) 2.7	223.3	
					-7	226	감) 2.6	223.4	
					-8	225	감) 25.0	-	
R11	R11	1,702	감) 1.4	1,700.6	-1	283	증) 93.2	376.2	
					-2	283	감) 46.0	237.0	
					-3	284	감) 46.9	237.1	
					-4	284	감) 8.1	275.9	
					-5	284	감) 8.2	275.8	
					-6	284	증) 14.6	298.6	
R12	R12	3,789	감) 2.2	3,786.8	-1	267	감) 41.1	225.9	
					-2	266	감) 40.2	225.8	
					-3	266	증) 15.4	281.4	
					-4	266	감) 10.4	255.6	
					-5	266	감) 45.4	220.6	
					-6	266	감) 57.7	208.3	
					-7	331	감) 96.6	234.4	
					-8	265	증) 10.1	275.1	
					-9	266	감) 36.6	229.4	
					-10	266	감) 23.3	242.7	
					-11	266	감) 23.4	242.6	
					-12	266	감) 30.1	235.9	
					-13	266	감) 19.4	246.6	
					-14	266	감) 11.5	254.5	
					-15	-	증) 204.0	204.0	
					-16	-	증) 204.0	204.0	
R13	R13	1,803	감) 2.3	1,800.7	-1	226	감) 11.8	214.2	
					-2	225	감) 41.3	183.7	
					-3	225	감) 5.4	219.6	
					-4	224	증) 58.7	282.7	
					-5	225	감) 43.7	181.3	
					-6	226	증) 42.5	268.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7	226	감) 19.5	206.5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8	226	증) 18.2	244.2	
R14	R14	1,913	감) 0.9	1,912.1	-1	243	증) 22.5	265.5	
					-2	244	증) 25.2	269.2	
					-3	243	감) 14.5	228.5	
					-4	227	감) 33.1	193.9	
					-5	227	감) 29.2	197.8	
					-6	243	증) 69.2	312.2	
					-7	243	감) 20.5	222.5	
					-8	243	감) 20.5	222.5	
R15	R15	2,502	감) 5.1	2,496.9	-1	255	증) 63.6	318.6	
					-2	271	증) 43.8	314.8	
					-3	271	증) 79.3	350.3	
					-4	271	증) 79.4	350.4	
					-5	269	감) 33.2	235.8	
					-6	237	감) 1.3	235.7	
					-7	236	감) 0.3	235.7	
					-8	236	감) 12.4	223.6	
					-9	236	감) 4.0	232.0	
					-10	220	감) 20.0	-	
R16	R16	1,667	감) 0.1	1,666.9	-1	278	감) 117.9	160.1	
					-2	278	감) 91.4	186.6	
					-3	278	감) 56.4	221.6	
					-4	278	증) 38.6	316.6	
					-5	278	증) 69.0	347.0	
					-6	277	감) 125.4	151.6	
					-7	-	증) 283.4	283.4	
R17	R17	1,804	감) 1.0	1,803.0	-1	226	증) 23.4	249.4	
					-2	225	감) 18.0	207.0	
					-3	225	증) 5.9	230.9	
					-4	225	증) 6.0	231.0	
					-5	225	감) 16.5	208.5	
					-6	226	감) 29.7	196.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7	226	감) 71.7	154.3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8	226	증) 99.6	325.6	
R18	R18	2,521	감) 5.3	2,515.7	-1	253	감) 53.0	200.0	
					-2	252	감) 52.1	199.9	
					-3	252	감) 38.9	213.1	
					-4	252	감) 49.2	202.8	
					-5	252	감) 32.3	219.7	
					-6	252	감) 32.3	219.7	
					-7	252	감) 14.7	237.3	
					-8	252	감) 4.4	247.6	
					-9	252	감) 14.2	237.8	
					-10	252	감) 14.2	237.8	
					-11	-	증) 300.0	300.0	
					R19	R19	2,355	감) 6.2	
-2	249	감) 18.5	230.5						
-3	249	감) 26.6	222.4						
-4	249	증) 32.1	281.1						
-5	250	증) 31.1	281.1						
-6	277	감) 27.2	249.8						
-7	277	감) 27.2	249.8						
-8	277	증) 21.6	298.6						
-9	278	증) 27.0	305.0						
R20	R20	1,805	감) 1.3	1,803.7	-1	226	증) 16.0	242.0	
					-2	225	증) 5.3	230.3	
					-3	225	증) 23.4	248.4	
					-4	225	감) 37.4	187.6	
					-5	225	감) 39.9	185.1	
					-6	226	증) 19.3	245.3	
					-7	226	증) 1.3	227.3	
					-8	227	증) 10.7	237.7	
R21	R21	2,521	감) 0.1	2,520.9	-1	253	증) 61.4	314.4	
					-2	252	감) 63.4	188.6	
					-3	252	감) 102.0	150.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4	252	감) 55.2	196.8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5	252	감) 45.5	206.5	
					-6	252	감) 48.3	203.7	
					-7	252	감) 48.3	203.7	
					-8	252	감) 12.0	240.0	
					-9	252	증) 11.1	263.1	
					-10	252	감) 98.2	153.8	
					-11	-	증) 200.3	200.3	
					-12	-	증) 200.0	200.0	
R22	R22	1,475	감) 3.0	1,472.0	-1	283	감) 7.8	275.2	
					-2	283	증) 2.5	285.5	
					-3	283	증) 2.6	285.6	
					-4	209	증) 142.8	351.8	
					-5	209	증) 64.9	273.9	
					-6	208	감) 208.0	-	
R23	R23	1,806	감) 1.5	1,804.5	-1	227	증) 42.0	269.0	
					-2	225	증) 84.1	309.1	
					-3	225	증) 99.7	324.7	
					-4	225	증) 99.7	324.7	
					-5	225	증) 148.8	373.8	
					-6	226	감) 22.8	203.2	
					-7	226	감) 226.0	-	
					-8	227	감) 227.0	-	
R24	R24	1,693	감) 0.3	1,692.7	-1	283	감) 86.0	197.0	
					-2	280	감) 90.9	189.1	
					-3	281	감) 100.6	180.4	
					-4	282	감) 2.3	279.7	
					-5	282	감) 92.7	189.3	
					-6	285	감) 95.8	189.2	
					-7	-	증) 234.0	234.0	
					-8	-	증) 234.0	234.0	
R25	R25	2,049	감) 1.8	2,047.2	-1	256	증) 8.0	264.0	
					-2	256	감) 13.1	242.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3	256	증) 47.7	303.7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4	256	증) 63.7	319.7	
					-5	256	감) 53.0	203.0	
					-6	256	감) 22.2	233.8	
					-7	256	감) 22.7	233.3	
					-8	257	감) 10.2	246.8	
R26	R26	974	-	974.0	-1	257	감) 52.0	205.0	
					-2	255	증) 1.3	256.3	
					-3	257	감) 0.7	256.3	
					-4	205	증) 51.4	256.4	
R27	R27	3,222	증) 2.7	3,224.7	-1	264	감) 101.4	162.6	
					-2	265	감) 38.6	226.4	
					-3	265	증) 103.2	368.2	
					-4	265	감) 6.0	259.0	
					-5	265	증) 4.9	269.9	
					-6	265	감) 51.5	213.5	
					-7	265	감) 33.4	231.6	
					-8	268	증) 106.8	374.8	
					-9	287	증) 3.4	290.4	
					-10	278	감) 29.4	248.6	
					-11	277	감) 28.2	248.8	
					-12	258	증) 72.9	330.9	
R28	R28	2,657	감) 0.7	2,656.3	-1	277	감) 21.0	256.0	
					-2	277	감) 77.1	199.9	
					-3	277	증) 95.3	372.3	
					-4	277	감) 38.2	238.8	
					-5	278	증) 55.3	333.3	
					-6	250	증) 44.2	294.2	
					-7	255	증) 1.1	256.1	
					-8	255	감) 9.2	245.8	
					-9	255	감) 49.4	205.6	
					-10	256	감) 1.7	254.3	
R29	R29	3,670	-	3,667.0	-1	273	감) 99.8	173.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2	276	감) 1076	168.4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3	276	감) 62.3	213.7	
					-4	276	감) 68.8	207.2	
					-5	276	감) 62.3	213.7	
					-6	276	감) 69.6	206.4	
					-7	262	감) 54.5	207.5	
					-8	224	감) 9.9	214.1	
					-9	254	증) 16.4	270.4	
					-10	255	감) 11.7	243.3	
					-11	255	감) 79.2	175.8	
					-12	255	감) 56.7	198.3	
					-13	255	감) 1050	150.0	
					-14	257	증) 2.1	259.1	
					-15	-	증) 2008	200.8	
					-16	-	증) 2669	266.9	
					-17	-	증) 2982	298.2	
					R30	R30	2,609	감) 7.1	
-2	269	감) 64.2	204.8						
-3	269	증) 24.4	293.4						
-4	269	감) 95.2	173.8						
-5	247	감) 77.9	169.1						
-6	239	증) 90.3	329.3						
-7	261	감) 32.7	228.3						
-8	261	감) 48.6	212.4						
-9	261	감) 13.8	247.2						
-10	263	감) 0.6	262.4						
-11	-	증) 2324	232.4						
R31	R31	2,866	감) 1.6	2,864.4	-1	271	감) 39.8	231.2	
					-2	294	감) 62.8	231.2	
					-3	294	감) 0.6	293.4	
					-4	294	감) 63.9	230.1	
					-5	296	감) 65.9	230.1	
					-6	290	감) 59.9	230.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7	287	증) 78.0	365.0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8	288	증) 12.4	300.4	
					-9	288	감) 45.7	242.3	
					-10	264	감) 8.7	255.3	
					-11	-	증) 255.3	255.3	
R32	R32	3,011	감) 0.8	3,010.2	-1	256	감) 14.1	241.9	
					-2	255	감) 43.7	211.3	
					-3	255	감) 42.0	213.0	
					-4	255	감) 41.3	213.7	
					-5	255	감) 2.1	252.9	
					-6	254	증) 109.8	363.8	
					-7	241	증) 121.5	362.5	
					-8	249	증) 51.0	300.0	
					-9	249	감) 74.4	174.6	
					-10	249	감) 53.8	195.2	
					-11	249	감) 15.2	233.8	
					-12	244	증) 3.5	247.5	
R33	R33	2,384	감) 0.1	2,383.9	-1	302	감) 56.5	245.5	
					-2	301	감) 71.0	230.0	
					-3	301	감) 42.8	258.2	
					-4	299	감) 86.9	212.1	
					-5	286	감) 23.9	262.1	
					-6	296	감) 43.2	252.8	
					-7	296	감) 50.8	245.2	
					-8	303	감) 123.2	179.8	
					-9	-	증) 230.0	230.0	
					-10	-	증) 268.2	268.2	
R34	R34	2,587	감) 0.8	2,586.2	-1	341	증) 11.3	352.3	
					-2	324	증) 28.2	352.2	
					-3	324	증) 28.2	352.2	
					-4	324	증) 28.3	352.3	
					-5	324	감) 22.4	301.6	
					-6	380	감) 76.0	304.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7	285	증) 4.2	289.2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8	285	감) 2.6	282.4	
R35	R35	1,397	감) 0.2	1,396.8	-1	349	감) 38.6	310.4	
					-2	349	증) 18.8	367.8	
					-3	350	증) 9.1	359.1	
					-4	349	증) 10.5	359.5	
R36	R36	2,807	감) 0.4	2,806.6	-1	229	증) 132.6	361.6	
					-2	230	감) 29.4	200.6	
					-3	230	감) 41.3	188.7	
					-4	230	감) 54.3	175.7	
					-5	230	감) 39.1	190.9	
					-6	229	증) 64.4	293.4	
					-7	232	감) 27.4	204.6	
					-8	240	감) 12.0	228.0	
					-9	240	증) 38.6	278.6	
					-10	240	-	240.0	
					-11	239	증) 1.0	240.0	
					-12	238	감) 33.5	204.5	
R37	R37	2,978	감) 0.8	2,977.2	-1	244	증) 19.5	263.5	
					-2	244	증) 19.5	263.5	
					-3	244	증) 1.2	245.2	
					-4	244	감) 44.0	200.0	
					-5	244	증) 34.9	278.9	
					-6	242	증) 37.0	279.0	
					-7	234	감) 10.4	223.6	
					-8	255	감) 31.5	223.5	
					-9	255	감) 79.3	175.7	
					-10	255	증) 92.8	347.8	
					-11	255	감) 16.8	238.2	
					-12	262	감) 23.7	238.3	
R38	R38	1,643	증) 0.3	1,643.3	-1	257	증) 54.9	311.9	
					-2	256	감) 31.9	224.1	
					-3	256	감) 11.2	244.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4	256	감) 11.3	244.7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5	315	감) 81.3	233.7	
					-6	303	감) 110.9	192.1	
					-7	-	증) 192.0	192.0	
R39	R39	2,824	감) 0.8	2,823.2	-1	287	증) 45.2	332.2	
					-2	287	감) 1.4	285.6	
					-3	287	증) 61.1	348.1	
					-4	287	감) 67.7	219.3	
					-5	287	증) 74.2	361.2	
					-6	257	감) 21.8	235.2	
					-7	281	감) 45.4	235.6	
					-8	281	감) 45.3	235.7	
					-9	281	감) 45.8	235.2	
					-10	289	증) 46.1	335.1	
R40	R40	1,690	증) 9.4	1,699.4	-1	299	증) 1.0	300.0	
					-2	279	증) 21.0	300.0	
					-3	278	감) 117.1	160.9	
					-4	278	감) 60.3	217.7	
					-5	278	감) 58.3	219.7	
					-6	278	감) 124.5	153.5	
					-7	-	증) 185.9	185.9	
					-8	-	증) 161.7	161.7	

■ 단독주택 획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단독주택	·변경 - 위치 : 성황동 395-4 일원 - 면적 : 91,054㎡ → 91,003.5㎡	·확정측량에 따른 단독주택 획지 면적 변경

(2) 준주거시설용지(변경)

■ 준주거시설용지 획지(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RC1	RC1	2,361	감) 1.6	2,359.4	-1	394	감) 98.1	295.9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2	394	감) 98.1	295.9	
					-3	396	감) 1000	296.0	
					-4	387	감) 91.0	296.0	
					-5	394	감) 1046	289.4	
					-6	396	감) 1001	295.9	
					-7	-	증) 255	295.5	
					-8	-	증) 2948	294.8	
RC2	RC2	2,656	감) 0.2	2,655.8	-1	444	감) 1741	269.9	
					-2	437	감) 174	263.0	
					-3	444	감) 1784	265.6	
					-4	444	감) 1787	265.3	
					-5	444	감) 1787	265.3	
					-6	443	감) 1776	265.4	
					-7	-	증) 253	265.3	
					-8	-	증) 253	265.3	
					-9	-	증) 250	265.0	
					-10	-	증) 257	265.7	
RC3	RC3	1,655	증) 0.2	1,655.2	-1	276	감) 21.8	254.2	
					-2	276	감) 21.8	254.2	
					-3	276	증) 47.2	323.2	
					-4	276	감) 25.9	250.1	
					-5	275	감) 25.0	250.0	
					-6	276	증) 47.5	323.5	
RC4	RC4	2,647	감) 0.7	2,646.3	-1	932	증) 5232	1,455.2	
					-2	858	증) 3331	1,191.1	
					-3	857	감) 8570	-	
RC5	RC5	1,200	증) 1.0	1,201.0	-1	400	증) 4326	832.6	
					-2	400	감) 31.6	368.4	
					-3	400	감) 4000	-	
RC6	RC6	2,164	감) 0.6	2,163.4	-1	360	감) 26.6	333.4	
					-2	360	감) 21.7	338.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3	362	증) 37.5	399.5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4	360	증) 21.5	381.5	
					-5	360	증) 59.9	419.9	
					-6	362	감) 71.2	290.8	
RC7	RC7	2,668	감) 0.7	2,667.3	-1	443	감) 72.8	370.2	
					-2	443	감) 1930	250.0	
					-3	443	감) 1732	269.8	
					-4	451	감) 2010	250.0	
					-5	444	감) 1861	257.9	
					-6	444	감) 1495	294.5	
					-7	-	증) 2944	294.4	
					-8	-	증) 3295	329.5	
					-9	-	증) 3510	351.0	
RC8	RC8	2,668	감) 0.5	2,667.5	-1	443	감) 1558	287.2	
					-2	450	감) 1560	294.0	
					-3	443	감) 1822	260.8	
					-4	444	감) 1833	260.7	
					-5	444	감) 1833	260.7	
					-6	444	감) 1833	260.7	
					-7	-	감) 2009	260.9	
					-8	-	감) 2008	260.8	
					-9	-	감) 2008	260.8	
					-10	-	감) 2009	260.9	
RC9	RC9	1,578	증) 0.3	1,578.3	-1	263	감) 13.0	250.0	
					-2	263	감) 12.8	250.2	
					-3	263	감) 6.0	257.0	
					-4	263	증) 58.0	321.0	
					-5	263	감) 12.9	250.1	
					-6	263	감) 13.0	250.0	
RC10	RC10	1,846	증) 0.9	1,846.9	-1	462	감) 87.7	374.3	
					-2	461	감) 1169	344.1	
					-3	462	감) 85.9	376.1	
					-4	461	감) 84.8	376.2	
					-5	-	증) 3762	376.2	

■ 준주거시설용지 획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준주거시설	·변경 - 위치 : 성황동 448 일원 - 면적 : 21,443㎡ → 21,441.1㎡	·확정측량에 따른 준주거시설 획지 면적 변경

(3) 공동주택용지(변경)

■ 공동주택용지 획지(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주택	L-1	24,845	-	24,845.0	성황 384-1일원	24,845	-	24,845.0	
	L-2	39,115	감) 3,546.0	35,569.0	성황 392-1일원	39,115	감) 3,546.0	35,569.0	
	L-3	54,370	-	54,370.0	성황 298-5일원	54,370	-	54,370.0	
	L-4	-	증) 3,544.9	3,544.9	성황 419일원	-	증) 3,544.9	3,544.9	

■ 공동주택용지 획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L-2	공동주택	·변경 - 위치 : 성황동 426-4 일원 - 면적 : 39,115㎡ → 35,569.0㎡	·확정측량에 따른 공동주택 획지 면적 변경
L-4	공동주택	·변경 - 위치 : 성황동 419 일원 - 면적 : 0㎡ → 3,544.9㎡	·확정측량에 따른 공동주택 획지 면적 변경

(4) 상업용지(변경)

■ 상업용지 획지(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C1	C1	6,871	감) 5.8	6,865.2	-1	953	증) 48.2	1,001.2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2	1,129	감) 376.9	752.1	
					-3	1,041	감) 342.5	698.5	
					-4	1,041	감) 192.4	848.6	
					-5	902	감) 43.6	858.4	
					-6	902	증) 45.1	947.1	
					-7	903	증) 44.0	947.0	
					-8	-	증) 812.3	812.3	
C2	C2	1,851	감) 1.5	1,849.5	-1	361	증) 48.3	409.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2	361	감) 30.9	330.1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3	469	감) 19.0	450.0	
					-4	330	증) 0.1	330.1	
					-5	330	-	330.0	
C3	C3	7,714	감) 0.7	7,713.3	-1	774	증) 0.2	774.2	
					-2	774	-	774.0	
					-3	993	증) 1369	1,129.9	
					-4	612	감) 1008	511.2	
					-5	612	감) 39.7	572.3	
					-6	564	감) 19.2	544.8	
					-7	563	감) 7.1	555.9	
					-8	563	증) 28.6	591.6	
					-9	817	증) 1018	918.8	
					-10	721	감) 232	427.8	
					-11	721	감) 1385	582.5	
					-12	-	증) 3303	330.3	
C4	C4	3,576	감) 3.4	3,572.6	-1	348	증) 18.2	366.2	
					-2	348	증) 18.2	366.2	
					-3	365	감) 19.3	345.7	
					-4	361	감) 13.4	347.6	
					-5	362	감) 14.5	347.5	
					-6	352	증) 26.7	378.7	
					-7	352	증) 27.3	379.3	
					-8	362	감) 14.0	348.0	
					-9	361	감) 13.4	347.6	
					-10	365	감) 19.2	345.8	
C5	C5	8,168	감) 10.1	8,157.9	-1	703	감) 78.5	624.5	
					-2	703	증) 79.5	782.5	
					-3	889	증) 0.3	889.3	
					-4	786	감) 2919	494.1	
					-5	787	감) 2308	526.2	
					-6	786	감) 1778	608.2	
					-7	508	증) 221.4	729.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8	508	감) 77.5	430.5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 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9	950	감) 476.7	473.3	
					-10	774	증) 285.0	1,059.0	
					-11	774	감) 243.6	530.4	
					-12	-	증) 538.4	538.4	
					-13	-	증) 472.1	472.1	
C6	C6	4,068	증) 3.1	4,071.1	-1	480	감) 130.7	349.3	
					-2	487	감) 131.3	355.7	
					-3	480	감) 104.0	376.0	
					-4	477	감) 121.4	355.6	
					-5	486	감) 130.3	355.7	
					-6	338	증) 128.0	466.0	
					-7	366	감) 24.2	341.8	
					-8	476	감) 93.5	382.5	
					-9	480	감) 124.0	356.0	
					-10	-	증) 356.0	356.0	
					-11	-	증) 376.5	376.5	
C7	C7	7,439	감) 2.6	7,436.4	-1	774	감) 104.8	669.2	
					-2	774	증) 105.0	879.0	
					-3	945	증) 0.2	945.2	
					-4	581	감) 1.4	579.6	
					-5	581	증) 1.0	582.0	
					-6	544	감) 45.7	498.3	
					-7	544	감) 36.5	507.5	
					-8	544	감) 84.3	459.7	
					-9	848	증) 187.2	1,035.2	
					-10	652	증) 106.3	758.3	
					-11	652	감) 129.6	522.4	
C8	C8	3,489	증) 3.0	3,492.0	-1	348	증) 3.3	351.3	
					-2	348	증) 3.2	351.2	
					-3	366	감) 4.3	361.7	
					-4	345	감) 10.7	334.3	
					-5	349	감) 2.8	346.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6	337	증) 12.7	349.7	- 단,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7	337	증) 12.7	349.7	
					-8	349	감) 0.1	348.9	
					-9	345	감) 7.7	337.3	
					-10	365	감) 3.3	361.7	

■ 상업용지 획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상업용지	·변경 - 위치 : 성황동 474 일원 - 면적 : 43,176m ² → 43,158.0m ²	·확정측량에 따른 상업용지 획지 면적 변경

(5) 공공시설용지(변경)

■ 공공시설용지 획지(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북1	북1	3,018	증) 5.1	3,023.1	성황동 370-8 일원	3,018	증) 5.1	3,023.1	복합교육 연구시설

■ 공공시설용지 획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북1	복합교육 연구시설	·변경 - 위치 : 성황동 370-8 일원 - 면적 : 3,018m ² → 3,023.1m ²	·확정측량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복합교육 연구 시설) 획지 면적 변경

- 그 외의 공공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5.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6. 지형도면은 광양시청 택지과(061-797-28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용어를 정비하고, 빈집 철거 조치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이행을 의무화하여 빈집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3. 주요내용

- 관련법에 따른 “빈집” 용어 정의 (안 제2조제1호)
- 빈집 철거 전 해체허가·신고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2. 12. 2. ~ 2022. 12. 22.(20일간)

6. 의견제출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건축과(우 57785)
- 전 화 : 061-797-2876
- 팩 스 : 061-797-2590
- 전자우편 : khlst@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철거하는 등”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으로 한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 ----- ----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 -----.
제5조(지원방법)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5조(지원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2. 12. 2.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2. 12. 2. ~ 2022. 12. 16.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 로 위 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518-2번지	서문원	32m	6m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518-2번지	113㎡	동 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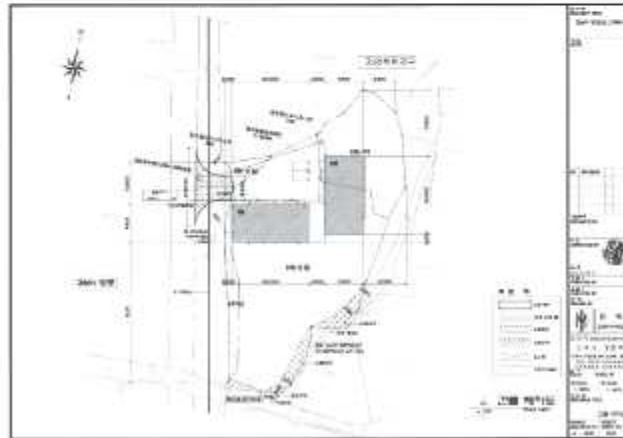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1/600, 1/1,200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 2022-233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광 양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광양시장(환경과)	주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33(중동)
소하천명		뒷골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796-1 필지		
	면적	165.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12. 1. ~ 영구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PC암거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참전의료비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인근 타 지자체에서 거주기간 제한없이 전입신고 이후 지급하며, 고령임을 감안해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삭제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급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로, “참전유공자” 를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로 변경(안 제3조)
- “참전유공자” 를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로 변경(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월 150,000원으로 지원 확대(안 제4조제1호)
- 참전유공자 의료비 수당 월 30,000원 지원 신설(안 제4조제2호)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0,000원 지원 신설(안 제4조제4호)

- 참전의료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신설(안 제5조제2항)
- 참전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신설(안 제5조제4항)

3. 입법예고기간 : 2022. 12. 6. ~ 2022. 12. 26.(20일간)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33(중동), 주민복지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2774
- 팩 스: 061-797-2594(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wlsdl1024@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이상 주소”를 “주소”로,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의료비 수당 월 30,000원 지급

4.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0,000원 지급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전의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의료비 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참
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보훈번호												대 상	
참전유공자 의료비 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의료비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한 참전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	유공 구분 ☐ 6.25 참전 ☐ 월남 참전	사망일	
예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 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지 여부 확인(가족관계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u>1년 이상 주소</u> 를 둔 만 65세 이상의 <u>참전유공자</u>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제3조(지원대상자) ----- ----- <u>주소</u> ----- ----- <u>참전유공자 및 그 배</u> <u>우자</u> ----- . ----- ----- .
제4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참전유공</u>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u>100,000원</u> 지급 <u><신 설></u> 2. (생 략) <u><신 설></u> 3. (생 략)	제4조(지원사업) ----- ----- <u>참전유공자 및 그 배</u> <u>우자</u> ----- ----- . 1. ----- 1 <u>50,000원</u> ---- 2. <u>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료비 월</u> <u>30,000원</u> 지급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u>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u> <u>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u> <u>자수당 월 100,000원</u> 지급 5.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생략) <u><신 설></u>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u>② 참전의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의료비 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u>
<u>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u> <u><신 설></u>	<u>③ -----</u> <u>----- 별지 제3호 -----</u> <u>-----</u> <u>-----.</u> <u>-----</u> <u>-----</u> <u>-----.</u>
<u>③ (생략)</u>	<u>④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u> <u>⑤ (현행 제3항과 같음)</u>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보훈의료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인근 타 지자체에서 거주기간 제한없이 전입신고 이후 지급하고 있으며 고령임을 감안해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삭제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신설 (안 제5조제8호)
- 사망위로금을 “참전의료비수당, 사망위로금” 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 보훈명예수당 월 150,000원으로 지원 확대(안 제8조제1항제1호)

- 보훈의료비수당 월 30,000원 지원 신설(안 제8조제1항제2호)
-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 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를 “달부터” 로 변경
(안 제9조제3항)
- 보훈의료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신설(안 제9조제4항)

3. 입법예고기간 : 2022. 12. 6. ~ 2022. 12. 26.(20일간)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33(중동), 주민복지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2774
- 팩 스: 061-797-2594(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wlsdl1024@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망위로금”을 “참전의료비수당, 사망위로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를 “한다) 및 보훈의료비수당”으로, “신청서”를 “신청서 및 보훈의료비수당 지급신청서”로, “1년이상 주소”를 “주소”로 한다.

2. 보훈의료비수당 월 30,000원 지급

제9조제3항 중 “다음 달”을 “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제2호”를 “제8조제1항제3호”로, “제2호 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④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훈의료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의료비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번호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 은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u> <u>나라사랑 정시를 기리는 사업</u>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시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 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 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u>사망</u> <u>위로금</u> 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 한다. 1. 보훈명예수당 월 <u>100,000원</u> 지 급 <u><신 설></u>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 ----- ----- -----. ----- <u>참전의료비수당, 사망위로</u> <u>금</u> -----. 1. ----- <u>150,000원</u> --- 2. <u>보훈의료비수당 월 30,000원</u> <u>지급</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u>제1항제1호 및 제2호</u> ----- ----- <u>한다</u>) 및 <u>보훈의료비</u> <u>수당</u> --- <u>신청서 및 보훈의료비수</u> <u>당 지급신청서</u> ----- ----- <u>주소</u> -----
2. (생 략) ② <u>제1항제1호</u> 의 보훈명예수당(이 하 “수당”이라 <u>한다</u>) 지급 대상자 는 수당지급 <u>신청서</u> 제출일을 기 준으로 광양시에 <u>1년이상</u> <u>주소를</u> 두고 거주한자 이어야 하며, 관계	

기관에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제9조(지급 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제10조
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 설>

④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제 제2호 서식의 국가보훈대상
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에 신청해야 한다.

-----.

제9조(지급 방법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달-----

-----.

④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훈
의료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
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의료
비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8조제1항제3호-----

- 제3호 서식-----

-----.

-----.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축제 유료화 등의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용어의 통일

- 용어의 통일을 통한 조례명확화
(축제의 주체, 운영자, 추진주체→축제추진위원회)

○ 조항신설

- 축제 자립화 조항 신설
- 입장권의 경우 입장료 범위 내에서 지역사업장 이용권으로 입장객에게 지급가능, 입장료 면제기준 마련
- 축제참여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체험행사, 경품 등 관광기념품 지급 가능

○ 근거규정 명확화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에 따른 다양한 수익사업 추진가능, 축제위원회 동의필요

4. 입법예고기간 : 2022. 12. 6. ~ 2022. 12. 26.(21일간)

5.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행정2길5 관광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2721
- 팩 스: 061-797-4187(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seho3849@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축제의 추진주체”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축제추진 운영자”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축제의 자립화)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자립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위원회 심의의결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된 내용에 따라 축제장 내 특정지역의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제출에 포함,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축제 수익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축제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장권은 입장료 범위 내에서 지역 사업장 이용권으로 입장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추진주체”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행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 및 관광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축제기간 중 축제장 일원의 공영주차장 요금과 관련하여 광양시 주차장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에도 불구하고 축제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u>축제의 추진주체</u> 는 사업 계획서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 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 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생략)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 <u>추진위원회</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정관리) ① (생략) ② <u>축제추진 운영자</u> 는 축제추진 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보 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재정관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u>추진위원회</u> ----- ----- ----- -----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의2(축제의 자립화) ① 추 진위원회는 축제의 자립화를 위 해 적극 노력한다. ② <u>추진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위원회 심의의결사항과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지방보조 금의 교부결정통지된 내용에 따 라 축제장 내 특정지역의 입장 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u>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제출에 포함,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축제 수익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축제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장권은 입장료 범위 내에서 지역 사업장 이용권으로 입장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추진위원회-----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생략)	제16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행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 및 관광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축제기간 중 축제장 일원의 공영주차장 요금과 관련하여 광양시 주차장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에도 불구하고 축제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용 근거 및 이행 강제금 감경기준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건축법」 제87조의3
- 「건축법 시행령」 제5조5, 제115조의4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신설(안 제38조4)
-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신설(안 제39조제2항, 제3항)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2. 12. 7. ~ 2022. 12. 27.(20일간)

6. 의견제출

「광양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건축과(우 57785)

- 전 화 : 061-797-2475

- 팩 스 : 061-797-2590

- 전자우편 : leebrokmc@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영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 한다. 이 경우 영제5조의5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 중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50실 이상인 건축물)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3.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도시형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 수수료의 1/2
2. 법 제87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 이행강제금의 1/2
3. 법 제87조의3제2항제4호의 경우 : 과태료 전액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점검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기술지원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추인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한부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 복지용도 건축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인 경우
4. 읍·면 지역에서 창고 등 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 컨테이너 등 이동이 쉬운 구조의 주거용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u> 1. <u>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u> 2. <u>「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건축물</u> 3. <u>「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로서 주택의 수가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u> 4. <u>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 ② (생략)	<u>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이 경우 영제5조의5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u> 1. <u>「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2)의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50실 이상인 건축물)</u> 2. <u>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u> 3. <u>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도시형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u>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제

1항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
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조례
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 수수료의 1/2

2. 법 제87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 이행강제금의 1/2

3. 법 제87조의3제2항제4호의 경우
: 과태료 전액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점검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
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
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기술지원

제39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생략)

<신설>

<신설>

제39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추인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한부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 복지용도 건축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인 경우

4. 읍·면 지역에서 창고 등 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 컨테이너 등 이동이 쉬운 구조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